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내 용

충청남도에서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쌀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¹⁾과 변동직접지불금²⁾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로 하며, 다만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농업외의 종

1) 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 지급
-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2)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

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쌀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하거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국·공유지를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자(이하 ‘국·공유지 임대차 미계약 자’라 한다),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2014~2016년도 쌀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 전용자, 국·공유지 임대차 미계약 자,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 소유자 등 아래 [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지급 현황’과 같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총 315농가에게 59,717,270원의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지급 현황(2014~2016년)

구 분	쌀직불금 지급농지 (㎡)			쌀직불금 지급내역 (㎡, 원)					재검토결과 회수해야 할 직불금 (㎡, 원)				
	건수	농지면적	전용면적	지급면적		지급액			회수대상 면적		회수금액		
	고정	변동	계	고정	변동	계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계	고정	변동
합 계 (A+B+C)	315	523,820	237,521	498,980	364,609	99,433,690	49,657,220	49,776,470	293,756	222,457	59,717,270	30,888,210	28,829,060
농지전용 (A)	236	451,857	237,621	428,262	309,760	79,118,590	39,702,900	39,415,690	223,038	167,608	39,402,170	20,933,890	18,468,280
국공유지 (B)	31	41,210	-	40,664	40,664	16,497,810	7,401,050	9,096,760	40,664	40,664	16,497,810	7,401,050	9,096,760
1,000㎡미만 (C)	48	30,753	-	30,054	14,185	3,817,290	2,553,270	1,264,020	30,054	14,185	3,817,290	2,553,270	1,264,020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계룡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는

[시정] 농지전용, 국·공유지 임대차 미계약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된 쌀소득보전직불금 59,717,27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